## (2)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관련제도 비교

구분	* 건축물내진성능평가요령	건축물내진성능평가 가이드라인	기존공공시설물[건축물]내진 보강업무처리 가이드라인	지진안전성표시제 업무처리지침	학교시설내진설계기준고시 (교육부 고시 제2017-143호)
주무부처	국토교통부 (한국시설안전공단)	행정안전부 (소방방재청)	행정안전부	행정안전부	교육부
시행일자	2016	2013	2018.03	2018.01.05	2018.01.01
법적근거	지진·화산재해대책법	지진·화산재해대책법	지진·화산재해대책법	지진·화산재해대책법	지진·화산재해대책법
기술자의 자격	(1) 지진공학 및 내진설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는 건축구조기술사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구조전문가로 제한 (2) 단, 정형적인 형태의 건물(3.1.1)은 일반구조전공자도예비평가를 실시 할 수 있음.	지진공학 및 내진설계에 대한 전문적 인 지식을 갖춘 건축구조기술사 혹은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구조전문가 로 제한	내진성능평가의 부실을 방지 하기 위하여 내진보강설계를 수행하는 책임구조기술자로 합(3.1.3)	내진성능확인자: 건축구조기술 사 확인(제4조4항)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기존시설 물(건축물)내진성능평가 및 향 상요령 (평가자 자격: 지진공학 및 내 진설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을 갖는 건축구조기술사, 혹은 동등 이상 자격의 구조전문가)	1.7.1 내진설계 및 내진보 강설계 책임구조기술자 : 건축구조기술자 [해설] 1)「건설기술진흥법」제6조 (건설기술용역에의 등록 등) ①항에 「엔지니어링산업진 흥법」제2조 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자, 「기술 사법」 제6조 제1항 사무소 등록 기술사 (2) 지진공학 및 내진설계 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건축구조기술사

관련 내용	(1)중저층의 기존 건축물 적용   예비평가  1단계상세평가  2단계상세평가 (2)장스팬 구조물과 고층건축물은 별도의 해석과 방법으로수행 가능.  (3)요구성능수준  거주가능: 내진특등급  인명안전: 내진1등급  붕괴방지: 내진2등급  붕괴위험: 없음.	<ul> <li>● 1단계 예비평가 ── 5층 이하 저층</li> <li>● 2단계 상대평가 ── 건축물</li> <li>● 3단계 정밀평가 ── 층수 구분 없음</li> </ul>	1.5 (용어의정의) - 내진성능평가 : 내진성능평가 기준 지진에 대하여해당 시설물이 소요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 내진성능평가자 : 내진성능평가책임구조기술자.	제3조(용어의 정의) (1)"내진성능평가"란 건축물이 내진설계기준에서 정하는 내진 성능을 확보하고 있는지 평가 (2)내진성능확인서:해당건축물 이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음 을 확인한 서류 (적용:내진성능평가가이드라인) 제4조(확인신청)	(1)구조검토, 구조감리, 안 전진단 서명날인(1.7.3) (2)기존구조물의 내진성능 평가 및 내진보강설계 결 과물 제3자 검토(1.8.1)
실시시기 및 대상	내진설계대상 시설물 (지진대책법 14조 제1항)	민간소유건축물	유지관리시	공공건축물(지진대책법14조 제1항) 유지관리시(제3조7항)	학교시설 설계,공사,시설물 운용시
참고		(단,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구조전문가 등의 평가자 판단에 의해 적용대상 건 축물 일부 제한)	[주문] 유지관리시 본 가이 드라인은 법적인 강제성을 갖지 않으며, 내진성능 추 진시 적극적인 활용 권고 [다른방법활용] (1)건축물내진성능평가 가이 드라인(행정안전부, 구 소방 방재청, 2013) (2)기존시설물의 내진성능평 가 및 향상요령(한국시설안 전공단)		